

「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10월 2일

나. 발 의 자: 김근한 · 김민성 의원(2인)

다. 찬 성 자: 강승수 · 김낙관 · 김재우 · 김춘남 · 소진혁 ·
양진오 · 장미경 의원 (7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10월 16일

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근 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평생교육법」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 계획에 따라 평생학습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, 대학 · 기업 ·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평생교육의 영역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2)
-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(당초) 운영할 수 있다 → (변경) 운영하여야 한다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, 제16조, 제21조의3, 제40조의3
- 기 타: 조례안 예고(2025. 10. 2. ~ 10. 10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영훈

○ 본 조례안은

- 평생학습에 대한 지역 대학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·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고령화 심화, 직업 구조 변화,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적 전환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의 평생학습 수요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. 특히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학습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, 단순 교양 수준의 학습을 넘어 전문 역량 강화, 직업 전환 지원 및 은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성인 평생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민간위탁 조항의 신설은 장애인·특수교육·전문자격 과정 등 집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시행 중인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평생학습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이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됨.
- 또한 상위법에 따라 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 생활권 단위에서의 학습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, 이는 ‘학습권의 보편적 실현’이라는 국가 평생교육정책 방향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